

임원 해임(사임)

1. 임원내역	직 위 (상임여부)		준법감시인 (상근)
	성 명		송락환
	임기	시작일	2020.03.04
만료일		2022.03.04	
2. 해임(사임)일			2022.02.03
3. 해임(사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4. 해임(퇴임)후 해당 직위 임원 현황	임원수		5
	사외이사비율(%)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및 절차			신규임원 선임완료 했으며, 공시 진행예정임

기재상의 주의

* 참고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3조, 동 시행세칙 제2조

주1) 임원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해임 또는 사임한 때 신고한다. 다만,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2) "사외이사비율"은 해당직위임원총수에 대한 사외이사총수의 백분율을 기재하되, 해임(사임)자가 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일 경우만 기재한다.

주3) 사외이사이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일 경우 '직위'란에 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구별하여 별도의 표를 작성한 뒤 두 개의 표를 공시한다.

주4)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5) 개별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 사항